「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생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u>"수입항에 도</u>	② <u>"수입항에 도</u>	•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u>착"이란</u>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	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	명확하게 규정
는 상태가 된 <u>것을 말한다.</u> <후단 신	<u>때를 말한다.</u> 이 경우 항해	-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
<u>설></u>	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상법 상 '하역준비완료 통
		지를 발송한 때'로 규정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	3	•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		의 산정 원칙을 규정
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u>비용을</u>	<u>비용으</u>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정하는 바와 같다.		
1. 수입물품을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	1	• 문구 수정(제1호와 제2
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계약에 <u>기초한</u>	<u>의하여</u>	호의 문구 통일)
해당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등에게 최종적으로 지급 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을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하 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 조료를 포함한다)

< 신 설 >

3.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 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 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합산 한 금액

4. · 5. (생략)

6.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 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 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 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지급
되는 금액
2
실제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u>1</u>
포함
<u>한다.</u>
<u>2</u> . · <u>3</u> . (현행 제3항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하해요서계약에서 수인묵푸이 우이

과 구분되는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의 결정방법을 별도 항 으로 분리
- (호 이동) 제3항제3호에 서 이동 및 문구 수정 (서술어로 통일)
- (호 이동)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이동
- 4.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 수입항에서 체선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 7. 콘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 (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 에 그 운송료가 구분되는 때에는 수 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 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8.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콘테이너의 임차 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 함하다.

<u><</u>신 설 >

9. (생략)

④ (생략)

제25조(통상운임) 영 제20조제4항의 "선 제25조(통상운임) -----박회사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

5. 컨테이너
6. 컨테이너
컨테이너

-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 수입항에서 도선료, 예 료가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 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 8. (현행 제3항제9호와 같음)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호 이동) 제3항제7호에 서 이동
- 외래어표기법 반영

- (호 이동) 제3항제8호에 서 이동
- 외래어표기법 반영
- 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 을 명확화
- (호 이동) 제3항제9호에 서 이동
- (항 이동) 제4항에서 이 동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말한다)을 <u>감안하여</u>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 임 등을 말한다.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 ⑥ (생략)

-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100개 업체 중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별 수입실적 기준 30개 업체를 비쿋상 후보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비교대상 후보업체로 한다.
- 1. ~ 3. (생략)
- 4.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 액이 매출원가 보다 많은 업체
- ⑧ (생 략)
-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u>고려하여</u>	
,	
	• 띄어쓰기 수정
⑧ (현행과 같음) ⑨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추 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1. 제8항제1호---ㅣ• 띄어쓰기 수정 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제34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의무자는 제33조 제5항부터 제9 ③ ----- 제33조제5항----- • 띄어쓰기 수정 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 정 기준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규칙 제 제38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7조의5제2항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 | • 띄어쓰기 수정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 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 법 시행규칙 . -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 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 다.

2. (생략)

②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 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 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 고, 16일 이상을 1월로 본다.

③ (생략)

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저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 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

		ما جا ما م	വിച്ചിച
		, , , –	- 법당 성비
		기준 반영	
- — — — — — — —			
<u>}</u>	<u> 버림</u>		
.			
수입물품 사	전심사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
		청창구를	관세평가분류
		원으로 일원	화
과세가격 결	정방법	• 띄어쓰기 =	수정
<u> </u>		알기 쉬운	- 법령 정비
 			
		, = = 0	
라,	 세평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u>버림</u>

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간 이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한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 세가격 결정방법 간이 사전심사 신청 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 7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46조(사전상담) 제45조에 따라 사전심 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사전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사전상담)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 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 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 전상담 접수·배부 주체 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 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 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 이 수행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본다.

제47조(사전심사) ① 제45조에 따라 사 제47조(사전심사) ① ------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 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1. ~ 4. (생 략)
- ② (생 략)
- ③ 본부세관장은 제45조에 따른 사전 심사의 신청이 영 제31조제6항 및 제 40조제3항에 따른 반려할 수 있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 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

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45조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 • 후단을 별도 항으로 분 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 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리

----- 관세평가분류원장 은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 다.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 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 원장으로 일원화하고, 본 부세관장이 배부받은 사 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

보한 <u>사실을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출</u>한 신청내용이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④ ~ ⑫ (생 략)

제48조(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으나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검토의견의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영제31조제2항 및 제9항를 준용하며,

<u>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u>
<u>유에 해당될 경우</u>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48조(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으
<u>나 제2항에 따라</u>

•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

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는 "별 지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 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 용)"로 대체하며, 제5항의 "별지 제16 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 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 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 를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동의여부 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 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해당 사전

④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
<u>가 제2항에 따라</u>

•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

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 에 따른다.

⑤ ~ ⑦ (생 략)

<신 설>

(5) ~ (7) (현행과 같음)

제49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 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 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 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 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 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 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 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로 신설

• (신설) 특수관계 수입물

품 사전심사 결정 후 변

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 제49조제5항 및 제6항

에서 이동하여 별도 조

제49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 제50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 • (조 이동) 제49조에서

37조제5항 및 영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자는 매년 사 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 식의 연례보고서를 제47조제11항에 따 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 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 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 고서를 차년도 연레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1. <u>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u><u>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u>의 실현여부
- 2. <u>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u> <u>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u> 출과정
- 3. <u>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u> <u>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u>

, ·
<u>당해 연도</u>

• 맞춤법 수정

이동

1. 영 제31조제8항제1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31조제8항제2호에 관한 사항

3. <u>영 제31조제8항제3호에 관한 사항</u>

• 영 규정으로 문구 수정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 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 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7조와 제48조 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보된 사 전심사 결정서의 문구 명확화, 단순 품목 추가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 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과세가 격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 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 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제49조 신설에 따른 규 통보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 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 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 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49조 규정을 준 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정 정비

- 단서 규정은 의미가 불 명확하여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 에 관한 훈령」에서 구 체화
- 제49조 신설에 따른 규 정 정비

<삭 제>

<u>제50조·제51조</u> (생략)

- <u>제52조</u>(준용규정) <u>제40조제2항, 제42조,</u> <u>제44조</u>의 규정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 제53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④ (생 략)
 - ⑤ <u>기타</u>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 ⑥ (생략)
- 제54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 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u>시급을</u> <u>요하는</u>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

<u>제51조·제52조</u> (현행 제50조 및 제51조
와 같음)
<u>제53조</u> (준용규정) <u>제40조제2항 및 제42조</u>
제53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회의에 부치는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시급한

- (조 이동) 제50조·제51
 조에서 이동
- (조 이동) 제52조에서
 이동 및 제49조 신설에
 따른 준용 규정 삭제
- (조 이동) 제53조에서 이동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알기 쉬운법령팀-404)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 (조 이동) 제54조에서 이동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알기

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u>제5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u> <u>54조제2항의</u>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결정

제5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 54조제2항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 1. ~ 2. (생 략)
- 3. <u>제53조제2항제1호에</u> 해당하는 위원 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 의하는 경우
- 4. (생략)
- ③ ~ ⑧ (생 략)

제56조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56조</u> (협의회의 운영) ① <u>제</u>
55조제2항의
<u>제54조제3항에</u>
,
2
<u>.</u>
1. ~ 2. (현행과 같음)
3. <u>제54조제2항제1호에</u>
4.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 (현행 제56조와 같음)

쉬운법령팀-404) 반영

• (조 이동) 제55조에서 이동

(조 이동) 제56조에서이동

제57조(관세평가자문단) ① 관세청장은	<u>제58조</u> (관세평가자문단) ①	• (조 이동) 제57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다음		이동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관세사, 법		
률전문가, 회계사, 학계 등)로 이루어진		
관세평가자문단(이하 <u>"자문단"라</u> 한다)	<u>"자문단"이라</u>	• 문장 정비
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기타</u>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	3. <u>그 밖에</u>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기준 반영
② 제1항의 전문가는 자문단 운영과정	②	
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u>제56조</u> 를	<u>제57조</u> -	
준용한다.	<u>.</u>	
<u>제58조</u> (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u>제59조</u> (재검토 기한)	• (조 이동) 제58조에서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동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u>매3년</u> 이 되는 시점(매 3	<u>매 3년</u>	• 띄어쓰기 수정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16 -	·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칙 <제2023-00호, 2023.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0월 0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 • 제24조의 개정 규정의 23년 00월 00일에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 •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과 동시에 관세청 평가분류 47221-114 7호(2000.12.19.)는 폐지한다.

- 개정된 고시 시행일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 을 명시
- 적용 시점을 명확화
- 기존 유권해석 폐지

현 행			개 정				
별지 제12호서식]			[별	지 제12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		일 반용 】 (처리기간 : 1개월)		과세가격결정	방법 사전4	심사신청서	【일반용】 (처리기간 : 1개월)
신 ① 상 호	② 대 표 자	(11)	신	① 상호		② 대 표 자	(
헌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전화	 번호)
<u>(4)</u> 수입 예정 물품			4	수입 예정 물품			
5)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5)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 금액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 금액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에	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① 신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실	!제지급금액에서 더하거	나 빼야 할 금액	
성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청 내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용	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⑧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	O O H		
「관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관세법」 제37조제1항 ト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1	<u> </u>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관세청 관세평가	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1 2 3	비서류> .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 .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기 .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기 .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계획서	계약서, 기술용역계약시	너, 기술도입계약서)	
	210mm×297mm(일반용>	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7mm(일	[반용지 60g/m²(재활용품)]

7	현 행			개 정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건	전심사 결정서 [일반용]	과세가격결정빙	: 법 사건	전심사 결정서 [일반용]			
신 ① 상 호	신 청 ② 대 표 자			② 대 표 자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인 ③ 주 소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사전심사 결정물품		④ 사전심사 결정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⑦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 방법		①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 방법					
8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9 적 용 기 간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고	ł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t 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서	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서	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취	류원장 ^{직인}	관세청	관세평기	가분류원장 직인			
<첨부서류>		<첨부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확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확용품))			

현 행

[별지 제14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갑)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 [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가 : 1년

						(저다기간 ㆍ 1년/		
신	① 법인명(상호)							
청 인	③ 주 소		ত্র)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업	⑦ 국가 및 주소							
8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9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 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 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관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수입 예정 물품(⑧)은 신청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및 제47조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 정

[별지 제14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갑)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 [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청 인	③ 주 소		(전화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ם 업	① 국가 및 주소							
(8)	수입 예정 물품	(품=	락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1)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 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 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관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수입 예정 물품(®)은 신청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및 제47조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Гнэ	기 게15중 사시]	면 앵			ГнЭ·	[별지 제15호서식]				
<u> </u>	지 제15호서식] 					시 제10호시설]				
고	l세가격결정방	법 사전심사 김	넘토의견서 [₺	특수관계자용】	괴	세가격결정방	법 사전심사 7	검토의견서 【 특	투수관계자용 】	
신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신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E	타(관계:)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	·(관계:)	
업	⑦ 국가 및 주소				업	① 국가 및 주소				
8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8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10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10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ا ا	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 미침			- 	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 미침			
 	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치지 않음				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치지 않음			
 	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가산요소()				네법 제30조제1항 내지	가산요소()			
	2항에 따른 가산 또는 제요소 해당 여부	공제요소()				?항에 따른 가산 또는 제요소 해당 여부	공제요소()			
	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조 적용				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시」제48조에 따라 특수관기	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d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시」제48조에 따라 특수관	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20	년 월 일				20	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mark>관세청</mark> 관세평가분	·류원장 (인)	
 기 하							귀 하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 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	8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	2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	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増ス]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괴	세가격 결정	성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 청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신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성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련 기업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관련 기업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⑦ 국가 및 주소					
8	나전심사 결정물품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9 2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11)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13)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③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 본		대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⑩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 <u><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u> │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시	제3오에 따다 자전검사 들과 공모들부터 2개들 이대에 공모된 과제가격의 난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별]	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과세가?	후 결정방법 사전·	심사 연례보고서	
보 고	① 상호	② 대 표 자	보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사자	③ 주 소	(전화번호)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4	④ 결정물품 (첨부가능)		④ 결정물품		(첨부가능)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⑥ 통관세관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법인명(상호)	대 표 자	법인명(상호)		대 표 자	
⑦ 관련 기업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① 관련 신청인과의 관계 기업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1,10	국가 및 주소		국가 및 주소			
8	⊥ 사전심사결과		 ⑧ 사전심사결과			
	적 용 기 간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정)	⑨ 적 용 기 간 ⑩ 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괴	·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 ^{면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	장 귀하	<u>관세청</u> 관세평기	가분류원장 귀하		_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3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절 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1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및 가정의 실현여부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선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사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업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입물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별지 제19호서식]			[별	지 제19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일반용】 (처리기간 : 1개월)	2	·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일	실반용 】 기간 : 1개월)	
신 ① 상호		② 대 표 자	신	① 상호		② 대 표 자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4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5)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① 재심사 신청 요지				재심사 신청 요지				
⑧ 신청 내용			8	신청 내용				
「관세법」 제37조제3항 및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3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20 년 월 일		「관세법」 제37조제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		3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 20 년 월 일	가격결정방법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구	기 하			관세청 관세평기	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사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					·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 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제			
						210mm×297mm(일반용지 60g	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시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 【일반용】	과세기격 결정방법 시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 【일반용】
신 청 2 대 표 자	신 청 2 대 표 자
인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시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④ 시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① 재심사 신청 요지	⑦ 재심사 신청 요지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⑧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⑨ 적 용 기 간	9 적 용 기 간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통보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참부서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참부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사전심사 신청서 【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6개월)	과세가격 결정병	방법 간이사전심사 신청서	【 특수관계자용 】 (처리기간 : 6개월)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① 법인명(상호) 신 청	② 대 표 자	(11112 3127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법 제2조 적용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법 제2조 적용			
⑤ 법인명(상호)	⑥ 대 표 자	⑤ 법인명(상호)	⑥ 대 표 자				
관 련 기 ① 신청인과의 관계 □모기 업	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전 면 기 입 입 입 기 입 기 입 기 입 기 1 1 1 1 1 1 1 1 1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	타(관계:)			
8 국가 및 주소		8 국가 및 주소					
⑨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⑩ 수입 예정 시기	⑪ 통관 예정 세관	⑩ 수입 예정 시기	⑪ 통관 예정 세관				
①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①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	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	「관세법」 제37조제1형 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	' 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띠 니다.	나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u></u>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히	ł	관세청 관세평가	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입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및 3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3.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1. 수입물품의 가격 산출방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3.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별	지 제22호	호서식]				[増	l지 제22	호서식]			
	관세.		결정방법 설의 사전:		세의 정상가격 청서		관세			결정방법과 국서 의 사전조정 신	
				(처리기간 : 90일)						(처리기간 : 90일)	
신 청	① 법인명	병(상호)		② 대 표 자		신 청		병(상호)		② 대 표 지	1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인					(전화번호)
관 련 기 업	(4) 법인명(상호) (5) 대 표 자				 관	4 법인명	g(상호)		⑤ 대 표 지	1	
	⑥ 신청인	과의 관계 □모자	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H 련	! ⑥ 신청인	!과의 관계	□모자된	 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① 국가	및 주소				업		및 주소			
결 ²		®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	별 명세 기재)			8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를 명세 기재)
	과세가격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관	세 과세가격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결정방법 심사 신청	⑪ 수입가격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결정방법 전심사 신청	⑪ 수입가격 김	결정방법	(필요시 별:	지로 작성)
		⑫ 대상거래						⑫ 대상거래			
	정상가격 난출방법	⑬ 적용기간					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⑬ 적용기간			
	승인 신청	⑪ 정상가격 산출방법		(필요시 별	별지로 작성)		전불성립 전승인 신청	14 정상가격 선	<u></u> 출방법	(필요시 별	지로 작성)
「관세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신청합니다.							「관세법」	제37조의2제	1항에 따리	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신청합	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민	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관세청	관세평가	분류원	장 귀하		
1	<첨부서류> 1.「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_	4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 령」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	
				210mm×2	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	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里 —	지 제23호	호서식]			[ˈt̪	별지 제23:	호서식]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적정, []부적정) 통지서								후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 ([]적정, []부		
신	① 법인명	(상호)		② 대 표 자	\ \ \ !		병(상호)		② 대 표 자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 c				(전호	· 화번호)
관	④ 법인명	녕(상호)		⑤ 대 표 자	Į	④ 법인당 관	병(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업	⑥ 신청인	과의 관계 □모자	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근 - - - - - - - - - - - - - - - - - - -	련 기 ⑥ 신청인	<u></u>	□모지	·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터	타(관계:)
	① 국가 :	및 주소				□ □ ⑦ 국가	및 주소			
		® 검토결과	사전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적정, []부적정		<u>'</u>	⑧ 검토결과		사전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적정, []부적정
	통지내용	⑨ (부)적정 사유				통지내용	⑨ (부)적정 사	· n		
<u>t</u>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적정, [] 부적정)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통지합니다.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시작 20 년 관세평가분류원장	하는 것이 ([]적정, []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별지 제2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시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특수관계자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특수관계자용]				
신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신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청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면 6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업 ① 국가 및 주소	업 ① 국가 및 주소				
®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8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② 신청 내용	② 신청 내용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관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동 '®수입 예정 물품(심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동 '®수입 예정 물품(심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재심사 신청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통 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과세기격 결정방법	は 시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 [특수관	<u> </u>	과세기격 결정방법 시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 [특수관계자용]				
신 ① 상호	② 대 표 자		신 ① 상호 ② 대 표 자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면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업 ⑦ 국가 및 주소			업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8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9 수입예정시기				
(ft)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 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	시」제48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	사전심사 재심	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48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귀 하				
※ 1. 재심사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 1. 재심사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2.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m²(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 행					개 정					
[별지 제29호서식]				[별ス	[별지 제29호서식]					
과세기	격 결정빙	법 시전심사 재심시	사 결정서 [특	수관계자용]	과	세기격 결정병	방법 시전심사 재심서	나 결정서 [특수	수관계자용]	
	상 호		② 대 표 자		신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청 인 ③ 주	주 소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4) H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련 기업 ^⑥ 신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관련 기업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7	국가 및 주소					①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시	사 재심사 결정물품				8 .	⑧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	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9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① 연례보	고 세관 및 부서				(1)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재심사 신청내용			12 2	⑫ 재심사 신청내용						
⑬ 사전심	사 재심사 결과 고	·세가격결정방법			13 .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	과세가격결정방법			
④ 결정조	건				14)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 본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뒷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근 법	님 제42소제 양세].		알려느립니다. 10mm×297mm(일반용지			텉匸 딥 제4Z소제Ⅰ양세 [*]		알려느립니다. 10㎜×297㎜(일반용지		

현 행			개 정					
[별지 제3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별지 제3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					
신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신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관 련 기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년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	반계:)		
업	⑦ 국가 및 주소		업	①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8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9	적용기간	20 ~ 20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심사 결과			⑩ 적용기간 연장신청 심사 결과					
13)	③ 연장신청 심사결과 연장적용기간 20 ~ 20 ④ 통관예정세관		(13)	연장신청 심사결과 연장적용기간	20 ~ 20 ⑭ 통관예정서	l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 \mathrm{mm} imes 297 \mathrm{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